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발달장애인 조사·신문 시 수사기관·법원의
신뢰관계인 동석 직권 허용〉

■ 이기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912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은 호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2
-----------------	---

I. 개요

1. 이기헌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6912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기헌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2. 20.

(3) 회 부 일 : 2026. 2.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진술하거나 신문을 받을 때 발달장애인 본인이나 보호자 등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발달장애인은 절차적 권리를 스스로 인식하거나 동석을 요청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아, 신청을 전제로 하는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도 법원 및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법원 및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직권으로도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진술권 및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 12조제3항·제5항 신설).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법원 및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신문·조사하는 경우, 직권으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 12조제3항·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①·② (생략)	제12조(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원은 발달장애인을 증인으로 <u>신문하는 경우</u> 발달장애인 본인, 검사,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의 <u>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u>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	③ ----- --- <u>신문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표현을 위하여 직권이나</u> ----- ----- ----- <u>신청에 따라</u> ----- ----- ----- ---. <u>다만,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④ (생략) <u><신설></u>	④ (현행과 같음) ⑤ <u>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2. 검토의견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달장애인 수용자 127명¹⁾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권조사(2025. 3.~5.)에 의하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신뢰관계인의 도움을 받은 인원은 27명(21.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년 12월,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 수사절차 전반에 관하여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키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권고하였음.²⁾

- 개정안은 이 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법원 및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본인이나 보호자 등이 동석을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권으로 신뢰관계인을 동석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기반 제도의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진술권과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참고로,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범죄피해자 증인신문(제163조의2) 및 검사·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제244조의5) 과정에서 증인·피의자의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 전국교정청 산하 수용시설에는 기결·미결수 포함, 총 262명의 발달장애인이 수용되어 있으며, 이중 127명을 면담함.

2) 국가인권위원회, (2025. 12. 1.), 「수사기관의 발달장애인 방어권 미보장 등 차별 직권조사(24직권0001000 결정)」.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은 피의자·사건관계인 조사 시 장애가 있는 경우 등은 경찰관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는 법원·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35조(신뢰관계인의 동석)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수사준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뢰관계인을 조사에 동석시킬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고지하고, 동석 희망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1.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2.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인 경우
 4. 그 밖에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 ② 경찰관은 제1항의 경우 신뢰관계인이 피의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아닌 한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은 경찰관이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해야 한다.

- 다만, 개정안은 부칙 제2조(적용례)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미 종료된 조사·신문 절차까지 소급하여 다시 진행해야 하는지에 관해 해석상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있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 칙

제2조(신뢰관계인 동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따라서 개정 규정이 종전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조사·신문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법원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신뢰관계인 동석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 개정 당시 부칙에서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규정한 바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517호, 2023. 7. 11., 일부개정]

제34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1.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9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및 제15조의2에 따른 범죄의 피해자

2. 19세미만피해자등

부 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현행 형사·사법절차 관련 신뢰관계인 동석 지원은 법원·수사기관 직권으로 지원 가능하나, 일부 사건관계인에 대해서는 입법 사각지대 존재하여 발달장애인의 진술권 및 방어권 보장을 위해 개정안 취지 공감함.
- 다만, 지원 여부에 대한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 존중이 필요하며, 수사 단계에서 발달장애인 여부 판별 기준·방식에 대한 규정 마련 및 신뢰관계인 요건·조력 범위 구체화 등 제도 보완³⁾이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502

3) 국가인권위원회(2026, 1월 13일),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경찰 발달장애인 조사 규칙」(가칭) 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 수사절차 전반에 관한 세부 내용과 절차 마련하도록 권고